

제56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사무관 박 소 영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전문위원 김 은 경

I. 회의 개요

지난 2023. 7. 3. ~ 7. 21. 동안 비엔나 UN 본부에서 제56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Commission)가 대면과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제56차 회의에서는 2022년 제55차 본회의 이후 진행된 각 분과별 논의 경과 보고 및 입법 가이드라인 등 결과물 채택, 유관기구와의 협력사업 진행 경과 및 성과,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이하 ‘UNCITRAL’) 협약 및 모델법 현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요 논의 내용 및 특이 사항은 다음과 같다.

II. 채택 문서

1. 제1분과

이번 본회의에서 제1분과는 지난 제39차 분과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문건(A/CN.9/1156)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공여 지침 초안(The UNCITRAL Guide on Access to Credit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공여 원활화 조치 챕터(Measures to facilitate MSME access to credit)에 포함된 권고안(Recommendations on Access to Credit for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채택하였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권고안 5

(b)(iv)의 경우 아래와 같이 최종 채택되었다.

“(iv) Enable creditor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their security rights when entering into the transaction by referring to the registry.”

먼저 기존 문안상 financiers를 creditors로 수정채택하였는데 이는 담보권이 없는 financiers가 있을 수 있다는 관련 초안 주석 (draft commentary)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creditors가 다른 등기된 담보권과 관련하여 담보권의 시간상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등기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석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문안상의 ‘by reference to the registry’를 ‘by referring to the registry’로 수정 채택하였다.

한편, (b)(ii)의 경우 장래자산(future assets)에 대한 담보권 설정 메커니즘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장래자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가능성은 UNCITRAL의 담보권 분야 작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문서들(e.g.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 지침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등)에서 그 세부 내용을 확

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달리 반영되지 않았다.

나. 권고안 6

본회의는 권고안 6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종 채택하였다.

“The law should provide for a secured transactions regime with respect to immovable assets which allows:

“(a) The creation of security rights over all types of immovable assets by all types of persons to secure all types of obligations;

“(b) The determination of the priority of the secured creditor’s rights when entering into the transaction; and

“(c) The realization of security rights over immovable assets.”

이 중 (b)에 대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담보권 실행 (the simple and economically efficient realization of security rights over immovable assets)을 언급해야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동 제안은 담보권 분야의 UNCITRAL 문서들, 특히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서 간단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담보권 실행 수단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들로 하여금 유동자산에 대한 담

보권의 법정외 집행(out-of-court enforcement)을 촉진하는 취지였음을 이유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고정자산의 경우 대다수의 관할권 하에서 그러한 집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다. 권고안 9

본회의는 권고안 9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종 채택하였다.

“In order to address MSMEs’ financial needs in the context of insolvency, the law should reflect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ose found in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and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

이에 대하여 standard라는 용어가 일부 관할권 하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legally binding)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권고안에서 예시의 형식으로 인용된 도구들의 제목으로 인해 이러한 도구들이 단지 입법적인 가이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standard라는 용어가 기존 UNCITRAL 작업물에 대한 총회 결의에서 UNCITRAL이 개발한 다양한 문서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어왔으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UNCITRAL 도산법 입법지침(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Insolvency Law for Micro- and Small Enterprises)」을 채택하는 본회의 결의에서도 이미 사용된 바가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이에 standard를 standardization guidelines 또는 best practices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라. 권고안 11

본회의는 권고안 11에 대해 아래와 같이 최종 채택하였다.

“The law should identify both the formalities and content requirements necessary to make a credit agreement effective taking into account the MSME’s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obligation it is incurring and in the avoidance of unfair terms or practices.”

기존 문안에 대해 불완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creditor’s interest in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with respect to enforcement of its claim for payment and the MSME’s interest in understanding the obligation it is incurring and in the avoidance of unfair terms or practices by the creditor.”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범위를 확장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관련 주석에서 신용공여자(creditors)의 이익은 다루어지지 않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MSME)의 이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상기 안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내용 수정 또는 추가의 형식으로 권고사항들을 개정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초안 주석(draft commentary)들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최종 채택안과의 통일성을 제고하였다.

2. 제2분과

제2분과는 본회의 요청에 따라 2021년 이후 국제 상거래 중재에서의 조기기각 및 예비판정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다. 특히 제2분과는 그간 논의 성과물의 적절한 형식(form)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지난해 본회의에서는 제안된 3개의 선택지 중 1번째인 ‘지침 문서(guidance text)’ 형식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제2분과는 제76차 회의에서 조기기각 및 예비판정에 대한 지침 초안 노트(a draft guidance note)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제77차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지침 초안 노트 문안은 「중재절차에 관한 UNCITRAL 노트(UNCITRAL Notes on Organizing Arbitral Proceedings)」에 대한 별

개의 노트인 Note 21. Early dismissal and preliminary determination로 포함되어 다루어졌다.(A/CN.9/1145)

이번 본회의에서는 심사 기준(review standards) 및 조기기각 2단계의 기간(periods of the two stages of the early dismissal)을 더 명확히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지지를 얻지 못함에 따라, 지침 초안 문서는 A/CN.9/1145에 포함된 문안 그대로 채택되었다.

3. 제3분과

제3분과는 제45차 공식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문건(A/CN.9/WP.1148, WP.1149, WP.1150, WP.1151)을 각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제3분과는 다음 네 가지 문건의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결의를 통해 각 문서를 채택하였다.

- ① 국제투자분쟁을 위한 UNCITRAL 모델 조정 조항(UNCITRAL Model Provisions on Medi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 ② 국제투자조정을 위한 UNCITRAL 가이드라인 초안(UNCITRAL draft guidelines on medi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mediation)
- ③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규

범과 그 해설서(the code of conduct for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with accompanying commentary)

- ④ 국제투자분쟁에서의 판사 행동규범과 그 해설서(the code of conduct for judg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 resolution with accompanying commentary)

각 채택문서의 논의 경과와 주요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제투자분쟁을 위한 모델 조정 조항 및 국제투자조정을 위한 UNCITRAL 가이드라인 초안

1) 논의 경과

제55차 본회의는 제3분과에 대하여, 향후 논의 주제로 대체적 분쟁해결방안(ADR)을 선정하고 관련 문안을 작성하여 차후 본회의에 제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제3분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이하 'ISDS')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의 소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조정(mediation)'을 검토하였으며, 제43차 및 제44차 공식회의에서 '조정 조항 초안'과 '투자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한민국은 'ISDS에서의 조정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개최된 제5차 회기간 회의 및 ISDS 맥락에서 적용할 조정 조항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진 제43차·제45차 공식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논의에 적극 참여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은 2021년 12월 조정 및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사무국 문건을 검토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제3분과는 제45차 공식회의에서 국제투자분쟁을 위한 모델 조정 조항에 관한 검토를 마무리한 후 위 문안을 제56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본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다.

2) 주요 결의 내용 - 국제투자분쟁을 위한 모델 조정 조항

○ 제1조 조정의 이용 가능성 및 개시

러시아는 조정에서의 당사자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조정의 개시일에 대한 간주 규정인 제6항에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무국이 러시아의 제안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6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러시아의 의견은 회원국의 지지를 받지 못

하여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Draft provision 1 (Availability and commencement of mediation)

6. The medi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commenced on the day on which the other party accepts the invitation.

○ 제2조 조정 제안에 요구되는 정보

조정 제안 시 제안 당사자가 명시하여야 할 정보를 규정한 제2조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더 많은 정보가 본 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수 회원국이 제2조는 조정 제안 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 공감하였고, 러시아의 제안은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회원국들은 현 문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제3조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절차와의 관계

회원국들은 다른 분쟁해결절차의 진행 중에 중재가 개시될 경우, 다른 절차의 중단을 요청할 양 당사자의 의무를 정한 제2항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일부 회원국은 제2항이 분쟁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할 의무를 창설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또 다른 회원국은 분쟁의 당사자들이 다른 분쟁해결절차

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 제4조 다른 절차에서의 정보의 사용

조정 과정에서 표시된 제안, 승인 및 합의 의사는, 그 내용이 의사 표시 당사자에 불리한 내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절차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일방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로 표시한 합의의 의사표시는 향후 관련 분쟁해결절차에서 해당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제한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유보에 관한 증거규칙 (without prejudice)이 조정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회원국들의 폭넓은 공감이 확인되었다.

다만, 회원국들의 합의 하에 이와 같은 내용을 조정 조항에 대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주석서(annotation)에 기재하고, 조정 조항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문건의 제목

일부 회원국(폴란드, 이스라엘, 파나마 등)이 문건의 제목으로 ‘조정 조항 초안 (draft)’보다 ‘모델 조정 조항(model)’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사무국은 본 문건이 ‘국제투자분쟁에 관한 조정’에

관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목에 ‘international’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분과는 문건의 제목을 ‘국제투자분쟁을 위한 UNCITRAL 조정 조항 모델(UNCITRAL Model Provisions on Mediation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주요 결의 내용 - 국제투자조정을 위한 UNCITRAL 가이드라인 초안

○ Section B

가나가 조정은 어떠한 분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라는 점과 분가이드라인은 특히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조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2단락의 “international investment”를 삭제하고, 단락 마지막에 “Therefore mediation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s to resolve IID”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이 가나의 의견을 수용하여 문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Mediation is a flexible process, whereby a third person (the “mediator”) assists the parties to negotiate an amicable settlement of the issues in dispute. It is an effective tool to resolve disputes with the mediator

structuring and facilitating a dialogue between the parties. Mediation allows the parties to exercise control over the process, to reach a self-tailored outcome and to preserve their relationship. Additionally, the involvement of a mediator provides necessary safeguards for due process, which is important as the outcome of the negotiations may be scrutinized or challenged by the public. As a form of assisted or facilitated negotiation, mediation can be useful when negotia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considered most suitable for resolving a dispute. Therefore, mediation can also be an effective tool to resolv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s.

○ Section I

일본이 26단락의 “Information about the extent of the settlement authority of the participants” 문구로 인해 국가가 결정권한에 대하여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공개하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다른 회원국들도 일본의 의견에 동의하여 문안을 “Information about the authority of the participants in the mediation to settle should be shared with the mediator and the other parties at an early stage of the mediation.”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국제투자분쟁 해결에서의 중재인 행동규범 조항과 해설서

1) 논의 경과

제3분과는 국제투자분쟁의 판정관(adjudicator)에 적용할 윤리 기준을 수립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중재인과 판사의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행동규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UNCITRAL과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공동으로 행동규범 조항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회원국의 논의를 거쳐 제56차 본회의에서 최종 문안이 채택되었다.

행동규범은 처음에는 하나의 문건(adjudicator(판정관)에 대한 행동규범)으로 작성되었으나, 회원국들이 중재인과 판사의 행동규범을 구분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여 44차 논의 시부터 중재인과 판사에 적용될 각 행동규범을 별개 문건으로 준비하여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제3분과는 중재인과 판사 행동규범과 각 행동규범에 관한 해설서를 완성하여 제56차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제56차 본회의에서 ① 국제투자분쟁에서의 중재인 행동규범과 그 해설서 및 ② 국제투자분쟁에서의 판사 행동규범과 그

해설서를 채택하였으며, 제3분과는 각 해설서를 강제력 없는 소프트규범(soft law)으로 도입하여, 사용자에게 자율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 두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은 제40차부터 제44차 공식회의에서 행동규범에 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였으며, 2020년 12월, 2022년 10월 두 차례 행동규범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 주요 결의 내용

○ 제1조 정의

(조항)

파키스탄은 “중재인(Arbitrator)”에 대한 정의 규정인 제1조 (c)항에 ICSID를 별도 명시하는 이유를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무국은 ICSID 중재판정부는 임시(ad hoc) 형태로 구성되기 때문에 규정의 ‘arbitral tribunal’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ICSID 중재판정부의 구성원도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재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 명시하였다고 답변하였다.

(해설서)

미국이 6단락의 ‘in the territory’가 해석상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영국이 제안한 문안(“refers to an agreement made with regard to an invest-

ment that the foreign investor makes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r a State of an REIO~”)에 회원국들이 동의하여 문안이 수정되었다.

6. The phrase “investment contract between a foreign investor and a State or an REIO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f a State or agency of a State or an REIO” in subparagraph (b)(iii) refers to an agreement made with regard to an investment that the foreign investor makes in the territory of a State or a State of an REIO (for example, a contract relating to a mining concession in State X concluded between an agency of State X and an investor with the nationality of State Y). Article 2(1), however, provides the flexibility to the disputing parties to apply the Code to arbitrators in a proceeding when the consent to arbitration is included in an investment contract concluded between a State and a domestic investor or any other type of contract (see para. 14 below)

○ 제2조 행동규범의 적용

(해설서)

행동규범의 적용과 관련하여, 제3분과는 ‘행동규범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구체적인 예시로 제시하는 대신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설명만을 적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예시를 내용으로 하는 15단락에서 18단락을 모두 삭제하였다.

또한 미국이 13단락 두번째 문장 (However, the obligations in article 8(1) and (2) survive the proceeding and the obligations in article 4(2) to (4) apply to individuals, who were a member of an arbitral tribunal or an ICSID ad hoc Committee (“former Arbitrator”))의 문장의 의미가 명확치 않음을 지적하였다. 회원국들이 미국의 의견에 동의하여, 중재인으로서의 임무가 종료된 ‘전임 중재인’ 역시 중재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비밀유지의무와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겸직제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문장을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However, the obligations in article 4(2) to (4) as well as article 8(1) and (2) survive the proceeding. In the other words, these obligations apply to individuals who served as a member of an arbitral tribunal or an ICSID ad hoc committee(“former arbitrator”).

○ 제3조 독립성 및 공정성

(해설서)

20단락에서 중재인의 독립성 및 공정성

에 관한 참고자료로써 언급된 ‘IBA 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미국, 아르메니아, 캐나다, 호주, EU 등이 해설서 내에 IBA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하는 대신 ‘IBA 가이드라인이 일반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내용만을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IBA 가이드라인’으로만 기재하는 경우 어떤 버전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2014 IBA 가이드라인’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대한민국 등 다수 회원국이 지지를 표하였다.

위 논의에 따라 20단락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20. Existing standards prepared by international bodies, such as the 2014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Guidelines on Conflicts of Interest In international Arbitration(the “IBA guidelines”), may provide useful guidance in this regard period.

24단락의 ‘비분쟁당사자의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미국이 서면이 아닌 구두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서면’ 요건을 삭제할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written’을 삭제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4조 겸직제한

(조항)

제3분과는 오랜 논의를 통해 중재인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재인이 중재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간 또는 임무 수행한 후 일정기간 동안 관련 사건에서 법률대리인·전문가증인 등으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겸직제한’을 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전임 중재인의 겸직제한을 규정한 제2항 내지 제4항과 관련하여, 겸직제한의 예외사유인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중재인으로써 참여한 절차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 중 어느 절차의 당사자 동의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아르메니아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각 조항 내 ‘분쟁 당사자’가 어떤 절차의 당사자를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다수 회원국(캐나다, 미국, 아르헨티나 등)가 조항 대신 해설서에 설명을 기재하는 방안에 지지를 표하여 해설서 40단락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베네수엘라가 ‘전임 대리인 또는 전임 전문가 증인’이 중재인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논의 결과 본 행동규범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바는 대리

인 또는 증인이 아닌 중재인 또는 전임 중재인의 겸직제한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려 베네수엘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해설서)

겸직제한의 예외로써 ‘당사자의 동의’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나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있었다. 아르헨티나, 베트남, 파키스탄 등은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하며 묵시적 동의는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고, 같은 취지에서 ICC(국제상업회의소)는 당사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동의 간주를 조항 내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싱가포르, 가나, 카메룬 등)과 해설서 내 기재를 지지하는 입장(미국, 영국, 콩고, 스위스 등)이 대립하였다.

스위스, 미국, 일본 등은 실무상으로 전임 중재인이 이전 절차의 분쟁 당사자들로 부터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특히 미국은 당사자들의 합의(포기)를 얻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 분쟁 당사자가 반대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란, 베트남 등은 분쟁 당사자들이 답변이 가능함에도 단순히

회신하지 않는 경우와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회신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구분하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3분과는 논의 끝에 해설서 내 ‘사망 등의 사유로 당사자의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 동의 간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해설서 내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6조 독립성 및 공정성

(해설서)

제3분과는 40단락에 위임 금지를 규정한 6조 (c)항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일본이 중재인의 ‘의사결정권 위임금지’를 정한 (6조 (c)항)과 관련해서, 해설서 49 단락의 취지를 조항에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다른 적용가능한 규칙에 의해 규정되지 아니한’ 문구를 조항 내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동의를 표한 일부 회원국(코트디부아르)이 있었으나, 캐나다, 러시아 등은 조항에 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지나치게 예외의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반대 회원국들은 일본의 제안을 반영할 경우, ‘조력자’에 대하여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의 취지를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였다.

결국 회원국들은 6조 (c)항의 문안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설서 49단락에 ‘본 조의 위임 금지 규정이 일정 조건 하에서 의장 중재인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 위임을 인정하는 중재규칙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7조 일방적 소통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참여 없이 중재인과 일방적으로 소통(Ex parte communication)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7조와 관련하여, 가나가 제1항 상 일방적 소통의 예외로써 명시된 agreement 앞의 ‘the’가 특정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영국 등이 가나에 동의하여 제3분과는 제1항의 ‘the’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설서)

영국은 52단락의 두 번째 문장이 ‘applicable rules’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해설서에 정의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회원국들이 영국의 의견에 동의하여 ‘applicable rules’의 정의를 해설서에서 삭제하고 제1조(정의) 규정에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8조 비밀유지

일본이 해설서 61단락에서 설명하는 공

개된 결정에 대한 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는 점을 규정한 제4항의 문안에 ‘공공에 공개’의 의미를 기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일본의 제안에 대하여, 파나마와 스위스는 조항에 그와 같은 문안을 포함시키는 경우 중재인에 ‘공공에 공개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중재인의 업무가 과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였다.

사무국은 이에 대하여 제4항은 중재인이 심리를 한 절차 내에서 내려진 결정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차 내에서 인용한 다른 결정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사무국의 설명이 있는 후, 회원국들의 일본 제안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가 확인되었다.

분과 내 논의 끝에, 제3항 및 제4항의 위치를 바꾸고, 문구를 일부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9조 비용·경비

미국이 문안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66단락의 첫 번째 문장 및 70단락의 두 번째 문장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수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66단락 및 70단락의 각 해당 문장을 “Paragraph 1 provides that the fees and expenses shall be reasonab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ment of consent or the applicable rules” 및 “This is intended to minimize the likelihood of disputes...”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제10조 조력자

미국이 71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중재인과 분쟁당사자 간 조력자 제안에 관한 의사소통은 제7조의 일방적 소통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미국은 또한 72단락의 ‘조력자가 준비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력자가 준비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원국들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제3분과는 문안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케냐가 74단락 및 75단락의 ‘consistent with’를 ‘in accordance with’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미국이 케냐의 수정안을 반영할 경우 관련 조항의 문구와 완전히 일치하여 의미가 순환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를 표명하여 케냐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제11조 공개의무

회원국들은 사무국이 중재인 행동규범

관련 준비 문건(WP.1148)을 통해 검토를 제안한 78단락 및 새로운 추가 단락(78bis)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무국은 새로이 제안된 78, 78bis가 기존보다 더 넓은 정보공개의무를 정하고 있는 것임을 설명하였다.

베트남은 처음에는 수정에 반대를 표하였으나, 수정 취지 및 효과에 대한 사무국의 설명을 들은 후 사무국이 제안한 78단락 및 78bis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다.

미국이 문단의 마지막에 제4조를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항도 필요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제4조를 명시한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고 영국이 이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그러나, 캐나다는 4조에 의해 금지되는 상황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고, 미국의 주장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where relevant(관련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90단락 문안 수정에 대하여 회원국들이 논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90단락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 비밀유지의무와 관계된 정보가 제11조 중 어떠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명

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캐나다와 영국, 베네수엘라 등은 비밀 유지의무가 반드시 제8조에 따라 발생하는 것만은 아니며, 다른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제안에 반대하여 미국의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 제12조 행동규범의 준수

제3분과는 행동규범의 적용대상에 ‘전임 중재인’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규범의 준수 의무를 정한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전임 중재인’을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국제투자분쟁 해결에서의 판사
행동규범 조항과 해설서

1) 논의 경과

판사 행동규범 조항과 해설서에 대한 논의의 경과는 중재인 행동규범과 동일하다. 다만, 판사 행동규범의 경우 상설투자법원의 설립, 상설체제의 규칙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칙적 채택(adoptio in principle)의 형태로 문건을 완성하였다.

러시아 등 일부 회원국이 제3분과에서 아직 상설체제의 규칙을 정한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행동규범 내 이를 참조, 인용하는 부분을 다수 규정한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이 회원국들은 상설체제의 도입에 관한 향후 논의에 따라 판사 행동규범 조항과 해설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제3분과는 본회의 상정 시 논의 경과를 보고하는 문건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기로 합의하였다.

“Views were expressed that it would be premature to consider or to finalize the code of conduct for judges for presentation to the commission for adoption in principle as the working group had not decided.”

2) 주요 결의 내용

○ 제1조 정의

(조항)

제3분과는 상설체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정해진 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a)호의 ‘the standing mechanism’을 ‘a standing mechanism’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1항의 두 번째 문장의 쉼표를 삭제하여 의미를 명확화 하는 방안에 합의하였다.

(해설서)

이란이 (a)호에 ‘to adjudicat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를 넣자는 의견을 제시

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상설체제의 관할이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 자세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기로 한 기존 합의를 고려하여 이란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란은 그렇다면 해설서 1단락에서 동일한 문구를 삭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하여 1단락에서 ‘to adjudicate international investment dispute’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제4조 검직제한

(조항)

러시아가 전임 판사에 대한 검직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EU 등이 판사는 상설체제에 속한 자로서 당사자가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독립성이 일정 부분 보장되고, 따라서 중재인과 동일하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여 러시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 제8조 비밀유지

(조항)

러시아가 상설체제의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상설체제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비밀유지에 관한 규정 예시를 기재한 28단락 세 번째 문장을 지울 것을 제안하였고, 미국 등 회원국의 지지를 얻었다. 이

에 제3분과는 28단락 세 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For instance, the rules of the standing mechanism may provide that: (i) a Judge may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deliberation to the president of the standing mechanism; (ii) a Judge may make a public statement as part of his or her official duties; or (iii) a former Judge may publish articles and make presentations within the three-year period upon receiving approval from the standing mechanism.

○ 제9조 공개의무

(해설서)

회원국들은 중재인 행동규범에 대한 해설서 수정과 맞추어, 51단락에 비밀유지의무로 인해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기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EU는 중재인과 같이 비밀유지의무로 인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으나, 상설체제 하에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을 것이라는 점 언급하였다.

○ 기타

제3분과는 중재인 행동규범 제3조, 제6

조, 제11조에서 수정된 사항을 판사 행동 규범 해설서 15단락, 24단락, 26단락, 35단락, 47단락 등에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결정하였다.

III. 향후 분과별 논의 계획(미래 의제 등)

이번 본회의는 각 분과의 회의 결과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향후 분과별 논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제1분과) 창고증권에 관한 모델법 초안 준비
- (제2분과) 기술 관련 분쟁 해결 및 재정(adjudication)에 대한 논의 계속
- (제3분과) 자문센터 설립, 절차규칙 개선, 상설투자법원 설립 등 ISDS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계속
- (제4분과) △ 자동 계약체결(automated contracting) 관련 조항, △ 정보제공계약(data provision contracts)에 관한 임의규정(default rules) 등의 마련 작업 계속
- (제5분과)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 도산절차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 계속
- (제6분과) 유통가능한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도구에 대한 논의

계속

한편, UNCITRAL에서는 각 분과별 의제 외에 창고증권, 유통가능한 복합운송증권 및 국제거래에 팬데믹이 미치는 영향 등의 주제가 추가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번 회의 세부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창고증권)

제53차 본회의 이후 이번 본회의까지 매 회의마다 창고증권 모델법에 관하여 사법 통일국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 작업반이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룬 논의 성과들이 보고되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사무국은 모델법 작성 작업을 제1분과에 배정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였고, 다수 국가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그간 UNCITRAL과 UNIDROIT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였다.

(팬데믹이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 관련)

팬데믹이 국제거래에 미치는 영향 등은 제53차 본회의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는데, 팬데믹 사태 속에서 국가별로 상이한 대응 조치들을 통해 국경간 무역 및 투자에 있어 국가별 격차 및 장애물이 명확히 드러남에 따라 국제거래규범의 조화에 대한 UNCITRAL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사무국은 위 주제에 관해 전문가그룹 회의 등을 통해 탐구를 지속하였고, 이번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성과로서 △ 2022 UNCITRAL LAC Days에서 MSMEs의 팬데믹 위기 대응 목적 UNCITRAL 도구 활용안 발표, △ 베트남과 공동주최한 2023 APEC 정치경제 다이얼로그, △ 아르메니아 외교부와 공동주최한 ‘국제보건위기가 무역의 법적기반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한 하이브리드 행사(2023. 6.) 등을 소개하였다. 해당 작업을 통해 팬데믹에 대한 국제거래규범 우수 사례나 도구들을 공유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 보건위기 발생시 회원국 지원에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 완화, 적응 및 회복탄력성 - 관련)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논의는 2021년 제54차 본회의에서 기존 UNCITRAL 규범과 기후변화대응 목적의 조화 방안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추가 작업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제안되면서 시작되었다. 지난해 2022년 제55차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향후 규범 작업 대상으로의 적합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사법(private law)적 측면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해당 주제의 중요성과 UNCITRAL 차원 작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별도의 공식 콜로키움 및 본회의 공식 논의(Work programme of the Commission) 주제로 선정되어 UNCITRAL 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향후 작업방향에 대하여 사무국, 회원국, 유관기관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이번 회의에서 사무국은 자발적 탄소배출권의 국제거래법제 도입 문제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질에 관한 UNIDROIT의 법적 이슈 분류작업(taxonomy)을 협업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UNIDROIT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이하 ‘HCCH’)는 협업 활동에 동의하였으나, 상당수 회원국들은 taxonomy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기구들이 중복(overlapping)된 분류작업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거래규범을 만드는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들은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려는 사무국의 목표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 파리협약 체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UNCITRAL이 기후변화에 관한 논의의 장을 새로이 확대하는 것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등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제거래에서 분산원장기술의 활용 관련)

지난 2022년 제55차 회의에서는 기존 자원 범위 내에서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거래에서 분산원장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법적 쟁점들에 대한 지침 문서(guidance document)’ 마련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사무국은 작업 범위를 담은 문서(scoping paper)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 회원국들은 블록체인 등 특정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기술의 사용법을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문서가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다소 광범위한 경향이 있다며 보다 실무적인 쟁점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등 다양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디지털경제에서의 분쟁해결 관련)

지난해 제55차 회의에서는 제54차 회의에서 지지되었던 디지털경제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이행점검 사업을 지속하고, 제56차 본회의에서 예비조사결과를 보고할 것이 요청되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사무국이 그간 진행해온 분류작업 및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해당 이행점검 사업의 기간 연장(1년 추가)을 위해 일본 법무부가 기금을 공여해준 것을 소개하면서 일본에 사의를 표하였다.

IV. 기타 활동 성과 보고

1. 유관기구와의 협력 활동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53차 본회의부터 사무국이 참여해온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공동 작업에 대한 내용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UNCITRAL이 총회(General Assembly)로부터 위임받은 활동 사항에 해당하며, 국제거래법의 조화 및 통일화 과정에서 작업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일관성, 지속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것임이 함께 언급되었다. 각 기관별 협력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 (UNIDROIT) 주로 담보계약 및 디지털 경제 등 다수의 주제에 관하여 협력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제53차 본회의에서 요청되었던 참고증권에 관한 모델법 초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HCCH) 디지털 경제 및 도산절차에서의 민사적 자산 추적 및 회복에 관한 준거법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함께 논의해오고 있음
- 그 밖에 UN 내외부의 다양한 기관단체(World Bank, UNCTAD, UNODC, OECD 및 WTO 등)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협력 작업의 내용들이 이번 본회의에 보고되었음
- 단, 사무국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에

있어서 UNIDROIT와의 잠재적 사업 중복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는데, 특히 본회의 미래과제로 검토중인 자발적 탄소배출권(voluntary carbon credits)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사업 분야에서 중복 우려를 표명함. 이에 대해 본회의 공식 세션이었던 기후변화와 국제거래법에 관한 콜로키움(7.12.~7.13.)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됨

2. 사무국의 비입법적 활동 성과

사무국은 그동안의 비입법적 활동(UNCITRAL 문서의 통일적 해석 및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보고하였는데 특히 ① 법제정비 지원 및 관련 협력, ② CLOUT와 같은 UNCITRAL 문서의 활용 및 확산 관련 정보 공유 시스템, ③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의 활동 성과 등에 대해 주로 언급하였다.

(법제정비 지원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사무국은 온라인교육과정(e-learning modules) 운영 내역을 설명하면서, 특히 UNCITRAL 문안들과 UN SDGs등 간 연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e-learning modules을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PPP를 포함한 3가지 자율학습 과정이 추가되었는데,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중국 상무부와 MOU를 체결하여 자금

을 지원받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 국제연구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와도 협력 중임을 밝혔다.

한편, 사무국은 UNCITRAL AP days, LAC days, days in Africa 등 UNCITRAL days 활동의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해당 활동들이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지역 및 미래 리더들에게 지원하는 동시에 UNCITRAL 작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UNCITRAL 규범 관련 사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인 CLOUT의 경우, 사무국은 CLOUT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른 학술기관 등과의 교류 등을 통해 법적 데이터의 정보 출처를 다양화하는 한편 클라우드 초안(abstract)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의 활동)

지난해 개소 10주년을 맞이한 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RCAP)은 이번 본회의에서 지난 해 개최한 ADR 컨퍼런스 등 그동안의 활동성과를 소개하였다. 나아가 2023년 하반기 일정으로 RCAP은 제3회 인천 법률 및 비즈니스 포럼(9.11.~9.12., 인천), 2023 UNCITRAL 남아시아 컨퍼런스(9.14.~9.16., 뉴델리), 제12회 ADR컨퍼런스

(11.2., 서울) 등 개최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한민국 대표단도 RCAP 개소 10주년 및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대면/화상 회의를 통해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무국도 RCAP의 활동 및 한국의 꾸준한 지원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의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하였다.

3. UNCITRAL 협약 및 모델법 현황

이번 본회의에서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하 ‘뉴욕협약’) 및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이하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가입한 새로운 국가들이 소개되는 한편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이하 ‘MLETR’)의 회원국별 국내 법제화 진행 상황이 공유되었다.

- (뉴욕협약) 지난해 이후 수리남,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입함
- (싱가포르조정협약) 올해 영국이 가입하였으며, 카자흐스탄과 우루과이가 비준하였음. 일본은 최근 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 초안을 완성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곧 가입 예정이라고 밝힘.

- (MLETR) 2021년 G7 정상회의에서 모델법 법제화를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음. 일본도 올초 국내 법제화를 위한 임시 초안이 제시되었으며, 현재 공청회 단계에 있다고 밝힘.

4. 부대행사 등

이번 본회의에서는 △ ISDS 개정, △ 디지털 통상 규범, △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UN협약(약칭 ‘베이징협약’) 서명식에 관한 세미나 등 다양한 주제로 부대행사가 개최되었다. 이 중 ISDS 개정 주제의 경우, △ ISDS 및 개도국의 관점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 ISDS 중재인 행동규범의 이행, △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IBD 가이드라인 개정에 관한 브리핑, △ 투자분쟁방지포럼 등 총 4개의 행사가 개최되었다.

V. 평가 및 전망

이번 본회의는 제3분과가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ISDS 모델 조정 조항 및 가이드라인과 중재인·판사의 행동규범 조항 및 해설서 문건을 성안하고 본회의에서 최종

본을 승인하였다는 점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또한 UNCITRAL 주요 규범의 국내 법제화 진행상황에 대한 회원국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국제상거래법 관련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경우도 2018년 싱가포르조정협약에 서명한 이후 이행법률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만큼 본회의에서 언급된 해외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본격적인 입법작업을 개시할 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LETR은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활용하는 선하증권 등 전자무역서비스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MLETR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 소개된 각국 국내 법제화 현황을 지속 주시하며 국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포스트 팬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팬데믹 이전에 시작된 주제들이 모두 마무리되고 신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도 각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UNCITRAL에서는 차기 논의 주제들로 창고증권, 기후변화대응과 국제거래규범 간의 연결성, 국제거래에서 분산원장기술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제1분과 주제로 선정된 창고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회원국들 간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기후변화, 기술규제 등 주제의 경우, 해당 논의가 국제거래규범 성안이라는 UNCITRAL의 소관 범위를 넘어 각 국가의 규제 관련 이슈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논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논의 대상을 국제거래법·국제사법적 쟁점에 한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주제 선정에 대한 이견을 줄여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으로서도 향후 신규 주제 선정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기민하게 살피는 동시에 국내 파급효과 및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